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695
------	------

제출일자 : 2025. 5. 29.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제73조, 제86조, 제94조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의기관: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첨부

2) 입법예고: 2025. 4. 25. ~ 2025. 5. 15.(20일 이상)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첨부

4) 규제사전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과)

5)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민원감사담당관)

6)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족정책과)

1. 제안이유

「동물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보완·정비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띄어쓰기 정비(안 제2조 및 제5조)

나. 인용조문 정비(안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20조)

다. 상위법 반영 명칭 변경(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20조)

- 생활공원 → 생활권공원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라. 등록대상동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유 및 첨부서류 정비(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동물보호법」 제2조, 제15조, 제34조, 제36조, 제40조, 제69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동물보호법」(이하“법”)”을 “「동물보호법」(이하 “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법제2조제1호”를 “법 제2조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사유없이”를 “사유 없이”로 한다.

제5조제3항제5호 중 “「고등교육법」 제2조”를 “「고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법 제14조제1항”을 “법 제3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5조제4항”을 “법 제36조”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법 제2조제2호”를 “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하 “동물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를 “제12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중전의 제4호) 중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대상동물”을 “등록대상동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중전의 제5호) 중 “등록대상동물 분

실 신고 후,”를 “등록대상동물의 분실신고를 한 후”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중전의 제6호) 중 “못쓰게”를 “못 쓰게”로 한다.

2. 소유자의 성명

3.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7. 등록대상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호”를 “제9호”로, “별지 1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을 “동물등록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4호”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동물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전단 중 “제21조”를 “제20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생활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생활권공원”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법 제39조”를 “법 제86조”로, “법 제32조제1항”을 “법 제69조제1항 각 호 및 제7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45조”를 “법 제94조”로 한다.

제20조 중 “제20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동물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동물”이란 「 <u>동물보호법</u> 」 (이하“ <u>법</u> ”이라 한다) 제2조제1 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1. “동물”이란 「 <u>동물보호법</u> 」 (이하“ <u>법</u> ”이라 한다) 제2조제1 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생 략)	2. (생 략)
3. “유실 · 유기동물(이하 “유기 동물”이라 한다)”이란 <u>법제2</u> <u>조제1호</u> 에 따른 동물 중 도로 ·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 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 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3. “유실 · 유기동물(이하 “유기 동물”이라 한다)”이란 <u>법제2</u> <u>조제1호</u> 에 따른 동물 중 도로 ·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 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 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4. ~ 9. (생 략)	4. ~ 9. (생 략)
10.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 으로 정당한 <u>사유없이</u> 불필요 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 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 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 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 으로 정당한 <u>사유없이</u> 불필요 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 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 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 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 14. (생 략)	11. ~ 14. (생 략)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

구성) ①・② (생 략)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공무원인 위원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③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서 동물보호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 「고등교육법」 제2조----- ----- ----- -----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생 략)	제9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 -----.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	1. 법 제34조제1항-----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 또는 등록인식표를 장착 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3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13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등록 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제12조----- ----- ----- ----- -----.
1. (생 략) <신 설> <신 설>	1. (현행과 같음) 2. 소유자의 성명 3.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2. 3. (생 략)	4. 5.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4.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8. 등록대상동물----- --
5.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신 설>	6. 등록대상동물의 분실신고를 한 후 --- 7. 등록대상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6.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경우	9. ----- -- 못 쓰게 -----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소유자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시행규칙 <u>별지</u>	② ----- ----- -- 제9호----- ----- <u>별지</u>

1호서식의 동물등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물등록증
2.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
③ 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주소를 변경하고, 등록사항을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② (생 략)
③ 구청장은 유기동물로 구조되어 제21조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난 길고양이의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구조 장소에 방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2항의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개체수 조절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생활공원 중 소공원 및 근린공원 또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고, 급식소의 관리와 운영은 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⑤·⑥ (생 략) 제15조(출입·검사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 사육·관리·보호자,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영업자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운영실태 조사 또는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동물보호실태 조사결과와 정보가 정기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생활권공원 ----- ----- ----- ----- ----- ----- ----- ----- ----- ----- ⑤·⑥ (현행과 같음) 제15조(출입·검사 등) ① ----- ----- 법 제86조----- ----- ----- 법 제69조제1항 각 호 및 제73조제1항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법 제94조----- ----- -----
---	---

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보호동물의 공고) 구청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공고문을 작성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단순히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경우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인한 추가비용 미발생.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지역경제과 동물복지팀 이강준
연 락 처	02-2627-2592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시행 2024. 1. 11.]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438호, 2024. 1. 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4.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3.4.19.>, <개정 2024.1.11.>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4. “맹견”이란 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5. “길고양이”란 도심이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사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6.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7.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이 아닌 곳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8. “사육포기 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7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소유자등이 정상적으로 동물을 사육하기 어려워 구청장에게 인수를 요청한 동물을 말한다.
9.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0.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기질평가”란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및 소유자등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12. “동물보호센터”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유기동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3. "동물복지지원센터"란 동물의 구조, 치료, 보호, 분양, 동물보호 교육 및 홍보 등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시설을 말한다.
14. "반려견 놀이터"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소유자와 함께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에 울타리를 둘러 만든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 ① 구청장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4.1.11.>
-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3.4.19.>]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 ①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동물복지종합계획 및 서울특별시시장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5년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복지계획(이하 "동물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4.19.>]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구성)

-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동물복지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공무원인 위원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23.4.19., 2024.1.11.>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4.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서 동물

보호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고, 부위원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4.19.>]

제6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4.19.>]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4.19.>]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4.19.>]

제9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등)

- ① 구청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1.11.>
-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
 2. 보호 중인 동물의 공고

3. 동물의 소유자 반환

4. 소유권 취득동물에 대한 기증 또는 분양 및 분양공고

5.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인도적 처리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8.12.31.>

④ 구청장이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자에게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8.12.31.>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4.19.>]

제9조의2(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와 보호·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36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4.1.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18.12.31.]

[제12조에서 이동 <2024.1.11.>]

제10조(동물 소유 등의 책임성 강화) 구청장은 관련기관 및 민간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동물보호 윤리의 확산을 위한 반려동물·실험동물·농장동물 등 동물 대상별 소유 등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4.19.>]

제11조(반려동물의 날 지정 등) 구청장은 매년 10월 4일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반려동물의 날로 지정하여 동물 애호·동물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을 위한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4.19.>]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

장치"라 한다) 또는 등록인식표를 장착 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내용을 확인하고, 통보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4.1.11.>

④ 구청장은 동물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31.]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9조의2로 이동 <2024.1.11.>]

제13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4.19.>

1. 소유자

2. 소유자의 주소

3. 소유자의 전화번호

4.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5.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6.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소유자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시행규칙 별지 1호서식의 동물등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물등록증

2.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

③ 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주소를 변경하고, 등록사항을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31.]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1.11.>]

제14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중성화의 목적으로 포획한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해야 한다. 다만, 길고양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장소로 정하여 방사할 수 있다.<개정 2023.4.19.>

③ 구청장은 유기동물로 구조되어 제21조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난 길고양이의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구조 장소에 방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2항의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23.4.1

9.>

④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개체수 조절과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생활공원 중 소공원 및 근린공원 또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고, 급식소의 관리와 운영은 법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4.19.>, <개정 2024.1.11.>

⑤ 구청장은 길고양이 증성과 사업을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3.4.19.>

⑥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증성화 사업 및 급식소 운영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3.4.19.>

[본조신설 2018.12.31.]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1.11.>]

제15조(출입·검사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 사육·관리·보호자,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영업자 등(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운영실태 조사 또는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설기준 등에 맞지 않을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 또는 구보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동물보호실태 조사결과와 정보가 정기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31.]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1.11.>]

제16조(명예동물보호관)

① 구청장은 법 제90조에 따라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4.1.11.>

② 제1항의 명예동물보호관은 동물보호 활동에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4.1.11.>

③ 명예동물보호관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개정 2024.1.11.>

[본조신설 2018.12.31.]

[제목개정 2024.1.11.]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1.11.>]

제17조(동물생명존중현장) 구청장은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행복한 구를 만들기 위하여 '금천구 동물생명존중현장'을 제정·선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31.]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1.11.>]

제18조(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의 실시)

① 구청장은 어린이, 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의 관리·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31.]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1.11.>]

제19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구청장은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조·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센터장이 유기동물을 구조하고자 할 경우,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4.19.]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1.11.>]

제20조(보호동물의 공고) 구청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공고문을 작성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1.11.>

[본조신설 2023.4.19.]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19조로 이동 <2024.1.11.>]

제21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유기동물의 구조·보호·분양 및 동물복지와 동물등록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 동물분양센터 및 영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유기동물의 구조·보호·분양 및 동물복지에 관련된 교육·홍보·위원회 등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0조로 이동 <2024.1.11.>]

제22조(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반려견 놀이터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4.19.]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1조로 이동 <2024.1.11.>]

관 계 법 령

동물보호법

[시행 2025. 1. 3.] [법률 제19880호, 2024. 1. 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 가. 포유류
 - 나. 조류
 - 다.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유실·유기동물”이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4. “피학대동물”이란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을 말한다.
5. “맹견”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 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 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도 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6. “봉사동물”이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7.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8.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遺棄)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9.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기질평가”란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및 소유자등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11. “반려동물행동지도사”란 반려동물의 행동분석·평가 및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12. “동물실험”이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을 말한다.
13. “동물실험시행기관”이란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이하 “등록동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2. 등록동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 ③ 등록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중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을 실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신고한 경우
2. 등록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이나 외국인등록사항이 말소된 경우
3. 등록동물의 소유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 및 방법·절차, 변경신고 절차, 등록 말소 절차, 동물등록대행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9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제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실·유기동물
2.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등으로부터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 중인 경우에는 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등록된 동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의 진단과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 등 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

④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도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6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35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 등은 동물의 보호조치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호비용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4.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제46조를 위반한 경우
6. 제86조제1항제3호의 지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7. 특별한 사유 없이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8. 보호 중인 동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분양한 경우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항제4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지정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에 대하여는 제3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공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9조(영업의 허가) ① 반려동물(이하 이 장에서 “동물”이라 한다. 다만, 동물장묘업 및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의 경우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로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营业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동물생산업
2. 동물수업업
3. 동물판매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3조(영업의 등록) ① 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營業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동물전시업
2. 동물위탁관리업
3. 동물미용업
4. 동물운송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營業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6조(출입·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동물 현황 및 관리실태 등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구

2. 동물이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검사

3. 동물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의 이행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정명령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보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

2. 제37조에 따른 보호시설운영자

3.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4. 제59조제3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을 받은 자

5. 제60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

6. 제63조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를 한 자

7. 제6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73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한 자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항제2호에 따른 보호시설운영자에 대하여 제37조제4항에 따른 시설기준·운영기준 등의 사항 및 동물보호를 위한 시설정비 등의 사후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항제7호에 따른 영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제70조제4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의 준수 여부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제69조제3항 및 제73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의 준수 여부와 제78조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⑤ 시·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관할 시·군·구의 점검 결과를 포함한다)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2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출입·검사 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점검(이하 “출입·검사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출입·검사등의 시작 7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입·검사등 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검사등 계획을 미리 통지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입·검사등을 착수할 때에 통지할 수 있다.

1. 출입·검사등의 목적

2. 출입·검사등의 기간 및 장소

3. 관계 공무원의 성명 및 직위

4. 출입·검사등의 범위 및 내용

5. 제출할 자료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다른 출입·검사등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

2. 제37조에 따른 보호시설운영자

3.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4. 제59조제3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을 받은 자

5. 제60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

6. 제63조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를 한 자

7. 제6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73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한 자

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수집·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동물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과공표 여부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1. 제6조제1항의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동물의 보호·복지 실태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6호에 따른 봉사동물 중 국가소유 봉사동물의 마릿수 및 해당 봉사동물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관한 사항

4.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39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와 유실·유기동물 등의 치료·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제37조에 따른 보호시설의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5의2. 제47조제5항에 따른 동물의 기증 및 분양 현황 등 실험동물의 사후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6.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 실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7. 제5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현황 등에 관한 사항

8. 제69조 및 제73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 및 등록과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9. 제86조제4항에 따른 영업자에 대한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동물의 보호·복지 실태와 관련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 동물의 소유자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현장조사를 포함한다)의 범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원녹지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2. 12. 18., 2013. 5. 22., 2016. 3. 22., 2020. 2. 4., 2021. 1. 12.>

1. 국가도시공원: 제19조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
2.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나.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다.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3.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나. 문화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다. 수변공원: 도시의 하천가·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라. 묘지공원: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마. 체육공원: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바. 도시농업공원: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사. 방재공원: 지진 등 재난발생 시 도시민 대피 및 구호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원

아.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

- ② 제1항 각 호의 공원이 갖추어야 하는 규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9. 16.]